

食品衛生에 관한法規小考

事務官 朴 奉 相

保社部·食品衛生担当官室

一. 法規의 必要性

于先 食品衛生法規라고 하는 것은 어떤것인가 하고 어렵게 生覺하지 아니하고, 쉬운方法의 하나로서 우리들 生活周邊을 中心으로 한번 살펴 볼 必要가 있다.

모든사람은 各自가 맡은바 “일”을 부지런히 그리고 誠實하게 遂行하려고 하고 있다. 이와같이 自己의 일을 부지런히 그리고 誠實하게 行하려고하는 것은 누구나가 貧乏하게되지 않으려고 모두들 熱心히 努力하고 있다고 生覺된다.

그러하지만 其中에는 貧乏한 사람도 있다. 이와같이 貧乏한 사람이 있는 것은 무슨 原因일까 하고 生覺해 볼 必要가 있으며 이런 貧乏한 現象은 흔히 “이世上에서 存在하는 것이다”라고 判斷해 버릴것이 아니라 그 原因을 한번 分析檢討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즉, 그와같은 貧乏한 사람은 自己의 일을 게을리하여 그와같이 貧乏하게 되었을까? 하고 生覺할 수도 있고 이와 反對로 게을리는 하지 않아도 貧乏하게 되는수도 있는것 같이 생각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들은 貧乏의 形態가 여러가지로 存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貧乏의 原因을 具體的으로 分析評價해 볼 必要가 있는것 같다.

이와같은 “貧乏”을 이 世上에서 없애버리면 없어

지는 만큼 잘 살게되는 것은 當然한 理致인 것이다 “貧乏의 神”을 집으로부터 追放한다면 그집이 豊富하게되는 것과 같이 이 世上으로부터 “貧乏”을 追放하게되면 그와같이 世上은 豊富하게 살기 좋게 될 것이다.

이리하여 人間社會로부터 貧乏을 없애기 爲하여는 한사람 한사람 各自가 맡은바 일을 부지런히 行하면 되지않을까 生覺한다. 貧乏을 없앨려면 貧乏의 原因을 于先 알 必要가 있다. 相對方의 正體를 把握하지 못하면 이를 一掃할 수 없는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貧乏의 原因을 考察하여 볼것 같으면 여러가지가 存在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첫째 失業을하면 貧乏하게되고

둘째, 열심히 일을 하는 한집안의 大黒柱가 되는 사람이 죽으면 貧乏하게되는 危險이 發生하게 될 것이고,

셋째로, 아무리 일을 熱心히 하여도 그일의 反對給付인 賃金을 싸게 받게되면 貧乏하게 된다.

넷째로, 子女를 많이 갖으면 貧乏의 原因이 되는 경우도 있다.

다섯째, 疾病으로 因하여 醫療費가 過多하게 支出될 때 貧乏의 原因도 된다.

여섯째, 收入에 比하여 支出이 많게, 돈을 거

세게 쓰는것도 貧乏의 原因이 된다.

貧乏의 原因이 되는 것을 여러가지 比較하였으나 이와같은 原因을 除去한다면 이 社會에서 貧乏이 없어지는 것은 틀림없는 事實인 것이다. 그러면 이와같은 貧乏의 原因을 整理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大別할 수 있을 것이다.

① 收入이 적어서 貧乏하게 되는 경우.

② 支出이 많아서 貧乏하게 되는 경우.

이 두가지로 大別할 수 있을 것 같다. 勿論 그 가운데에는 兩方이 重復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것은 그것으로써 또한 貧乏의 原因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 失業·倒産, 일하는 사람의 死亡같은 것은 ①의 경우와 같이 收入이 적어서 貧乏하게 되는 原因의 代表的인 것이고 疾病이나 浪費, 子女를 많이 가지는 것은 ②의 경우와 같이 支出이 많아서 貧乏하여지는 原因의 代表的인 것이라 하겠다.

이 가운데 疾病의 경우를 若干 考察해 볼 것 같은 疾病으로 인한 醫療費의 過多한 支出, 疾病이 發生하므로써 職場을 잃게 되는 경우와 이로 인하여 死亡하므로써 葬儀費가 過多하게 支出될 것이며 나아가 子女들이 남게 됨으로써 貧乏의 原因이 加重하게 되는 것은 틀림없는 事實인 것이다. 이렇게 生覺해 볼 것 같으면 疾病이 貧乏의 原因이 된다는 것이 相當한 部分(位置)을 占할 것이며, 貧乏이 原因의 王座의인 存在라 아니할 수 없다. 이와같이 疾病을 이 社會에서 除去한다면 그만큼 이 社會에서 貧乏이 없어지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疾病을 없애기 위하여서는 醫療業者의 힘만으로 이것이 果斷 없어질 것인지 생각해 볼 必要가 있는 것이다.

腹痛이 났다, 感冒에 걸렸다, 또는 다리를 다쳤다든지 하는 疾病이 發生하였을 때에는 醫療業者의 醫療行爲로 이것을 治療하게 된다. 즉 醫療業者에게 期待되는 것은 自己가 現在 患하고 있는 疾病을 빨리 治療하여 줄 것을 바랄뿐이며, 빨리 完快

지만 長期治療보다 亦是 醫療費가 적게 들게 되고 죽음이라는 것도 免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疾病의 治療期間 收入은 減少되고 減少되는만큼 貧乏하게 되는 것이다.

위에서 밝힌바와 같이 疾病을 除去하려면 單純한 醫療業者의 힘만으로 될 수 없는 것이다. 人間은 각

자가 가지는 貧乏의 原因이라고 生覺되는 王座의 存在인 疾病을 없애지 아니하면, 아니되고, 또한 조그마한 不注意로 이와같은 王座의인 疾病은 몸에 파고드는 것이다.

특히 우리들은 每日 몇회에 걸쳐 攝取하는 飲食物은 그와같이 그 危險이 많고 이와같은 飲食物은 消費者인 國民이나 流通過程을 担当하는 食品市場을 商業者나 또는 料理를 하는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의 “손”을 限量없이 거쳐서 모든 消費者의 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이 사람들의 經路를 거쳐가는 途中 한사람의 不注意로 많은 사람이 傳染病이나, 食中毒이 發生하게 되는 危險性이 있게되는 것이다.

그러므로해서 疾病의 原因이되는 많은 飲食物에 對하여 疾病에 걸리지 아니하게 하기 爲하여 다함께 努力하여야하며 이 社會로부터 이를 追放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리하여 이를 追放하는 手段이 바로 “食品衛生에 관계되는 諸法規”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싶다.

二、 法規의 目的

위에서 밝힌바와같이 “食品衛生”의 歧路의 役割을 하는 것이 “食品衛生에 관계되는 法規”이고 이의 大實의인 法律이 바로 “食品衛生法”인 것이다.

우리들이 登山할때 道標를 미리 마련하고 올라가는 것과같이 食品衛生에 모든 國民이 心慮할 때 이와같은 食品衛生法이라고하는 法律은 道標로서의 役割을 다할 수 없다고 볼 것이며 이런 경우 糞道標없이 山에 올라갔을 때의 迷者が 되는 경우가 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食品衛生法은 잘 遵守하지 아니할 때 이 社會에는 크나큰 貧乏의 原因을 만들고 말 것이다.

특히 職業으로서 飲食物에 臨하는 사람들은 他의 一般人에 比하여 一層 食品衛生法이라고 하는 法律을 遵守할 必要가 있겠고 이와같은 法律을 깊숙히 理解하지 아니하고 또한 遵守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다.

그러므로해서 食品衛生法이라고하는 法律은 어떤 것을 規定하고 있는 法律인 것인가하고 理解 하지

☆ 食品衛生 ☆

않으면 아니된다.

이것을 理解하는데 우리 모두 熱과 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食品衛生法第1條에서는 위에서 밝힌 여러가지 理由를 目的으로하여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는 것이다.

“이 法은 食品으로 因한 衛生上の 危害의 防止와 食品營養의 質의 向上을 圖謀함으로서 國民保健의 向上과 增進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三. 用語의 뜻

1. 食品이란?

食品衛生法을 理解하려고 하려면 手先 이 法律에서 使用하고 있는 用語의 뜻을 正確하게 알지 못하면 아니된다.

只今까지 아무生覺없이 無意識의으로 “食品”이라는 言葉を 使用하고 왔으나 도대체 “食品”이란 言葉이 어떠한것을 指稱하는 것인가? 一般的으로 쓰고있는 食品이란 言葉以外에도 食料品, 食料, 食糧, 飲食物, 食物등과 같은 言葉を 쓰고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이와같은 言葉과 食品과는 어떻게 불리는 것인가? 惑은 같은 言葉의 뜻을 가지는 것인가, 다만 表現을 달리하는 것인가하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食品衛生法에서는 食料品, 食料, 食糧, 食物등과 같은 言葉은 全然나오지 않는다. 다만, 飲食物이라고 하는 言葉은 使用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飲食物이라고 하는 言葉은 “食品”이라고 하는 言葉を 說明하기 위하여 補充的으로 使用되는 것이지 其他 어떤 다른 語味가 있어서 使用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法에서는 食料, 食物, 食品, 食糧, 飲食物과 같은 것을 指稱하는 경우를 “食品”이라고 하는 言葉로 統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食品」이란 도대체 어떤것인가 하고 生覺할 것 같으면 “먹는것”(즉, 齒牙의 上下運動으로써) “마시는 것”을 ① 그대로 飲食할 수 있는것과, ② 加工 또는 調理를 하므로서 飲食할 수 있는 경우로 区分할 수 있을 것이다.

- 위에서 말한 ① 과 ② 를 總稱하여 「食品」이라고

이 法에서는 規定하고 있는 것이다.

通常 “飲食物”이란 言葉を 使用할때에는 고기(魚)의 꼬리(尾)나 머리(頭)를 除去하는것과 같이 要한 部分을 除去한다든지 하여 “사시미”와 같이 調理한다든지하여 바로 飲食할 수가 있는것 같이 하였을 狀態를 가르키는 것이다. 生覺하나 實際로 當面하여 生覺하여 보면 加工한다든지 調理를 한다든지하여 飲食을 할 수 있는것과 그 材料 그대로를 大體的으로 먹는다든지 마실 수 있다든지 하는것도 있다.

食品衛生法에서는 이를 包含하여 마시는것, 먹는것등 모든 “物”을 「食品」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藥品도 그 攝取하는 方法이 마시게 되는 것이라면 食品이 아니냐하고 疑問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食品이 아니다. 그리하여 醫藥品 및 醫藥部外品은 食品으로부터 除外된다고 이 法에서는 規制하고 있는 것이다. 즉, 醫藥은 흔히 사람들이 마신다든지 먹는다든지 하고 있으나 食品이라고 하여 마신다든지 또는 먹는다든지 하는가의 否否를 區別하기에는 여간 힘드는 일이 아니다. 예를 들면 빵이나 쌀에도 維生素이 들어있고 또한 김에도 維生素이나 구론산이 들어있다. 이와같은 것을 어디까지를 食品이라고 하고 어디까지를 藥이라고 할

수 있을것인가는 大端히 어려운 일이다. 나아가서는 때때로 새로운 形態의 인스탄트化한 食品이 開發되어 나오고 있는것으로 이의 区分도 社會의 變遷에 따라 달라지지 아니하면 아니될 것이다.

一般的으로 食品이 지니고 있는 固有의 價值以上の 効能效果를 바라는것을 “醫藥品”으로 取扱하고 있으나 앞서 言及한바와 같이 새로운 食品類가 統々 出現하고 있으므로서 이의 區別의 判斷은 結果的으로 健全한 社會常識에 立脚하여 區別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것이다.

現在에 있어서는 앞에서 例를 들어 言及한바와 같이 維生素이 들어있는 빵이나 쌀은 食品이고 또 한 維生素이 들어있는 김도 食品임은 틀림없다.

“現行食品衛生法第2條”에서 “食品이라고 함은 모든 飲食物을 말한다. 다만 醫藥品과 醫藥部外品은 例外로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2. 添加物이란?

食品을 危險하다고 하는 第一의 發端은 赤痢菌같은 微生物이지만 第二의 發端은 食品에 여러가지로 加하여지는 色素나 香料같은 添加物이다.

이와같은 添加物은 食品을 加로하되 그 品質을 더 잘하기 爲하여 使用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自然의 食品과 꼭같이 하기 爲하여 食品의 必粧品 같은 느낌으로 使用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한 食品의 製造方法을 簡單하게 하기 爲하여 使用하는 것도 있다.

이와같은 것을 몇가지 간추려 例를 들자면

- ① 甘味劑(설탕, 포도당, 삭카린)
- ② 着色劑(食紅)
- ③ 着香料(바나라엣센스, 香辛料)
- ④ 保存料(사루찌 루酸)
- ⑤ 殺菌料(사라시粉)
- ⑥ 糊料(CMC)
- ⑦ 漂白劑(사라시粉)
- ⑧ 膨脹劑(重曹)

이와같이 添加物은 食品을 製造하는 途中에 使用한다든지 食品의 加工이나 保存의 目的으로 食品에 섞는다든지 混合을 한다든지하여 使用되고 있는 것이다.

“食品衛生法 第2條”에서 “添加物이라고 함은 食品의 製造過程에 있어 또는 食品의 加工, 保存의 目的으로서 食品에 添加, 混合, 浸潤 其他의 方法에 依하여 使用되는 物質을 말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이와같은 添加物 가운데에는 化學的 合成品이라고 하는 一群이 있다.

이것은 天然의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藥品과 같이 化學的方法에 依하여 人工의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하므로 添加物의 大部分은 이와같은 化學的 合成品인 것이다.

例를 들면 化學調味料도 이에 屬하며 삭카린 같은 人工甘味料도 化學的 合成品인 것이다. 藥品과 같은 添加物은 모두 이와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다.

最近 靑島 南方인지 그地點을 알수 없으나 어느

섬에서 日本兵士가 約 20余年間 혼자 살아 있었다고 하는 新聞報道가 있었다. 이 日本兵士는 天然의 狀態에 있는 食品을 따서 먹고 살아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때로는 죽을 腹痛이 있었던 적도 있었다고 한다. 이제부터는 그와 같은 것을 먹지 아니하고 安全한것을 選擇하여 먹겠다고 하고 있다. 이와같이 人間은 經驗에 依하여 危險한 食品은 避하고 먹어도 安全한 것만을 오랜時日을 두고 많은 經驗에서 이를 選擇하여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이와같이 天然의 食品인것 같으면 어느程度 危險性없이 安全하다고나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天然의 食品에다 여러가지 物質을 加하는 添加物 가운데에는 化學的인 方法에 依하여 만들어지는 化學的 合成品에 있어서는 아직껏 그 使用의 歷史도 짧고 安全할 것인지 아닌지 모르는 것이 많다.

한마더로 말해서 化學的 合成品이라고 하는 것은 그種類는 大端히 많으며 그 가운데에는 無害하거나 人間에게 必要한 것이 있는가하면 또한 毒性이 강한 것도 있는 것이다.

또한 一斷 安全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化學的 合成品 가운데에도 오랜 時日을 두고 사람이 먹는다는지 마신다든지 하므로서 어느 程度 人體에 影響이 있겠고 判明되는 것이 있는가하면 使用의 時間이 짧아 判明되지 않는 것도 있고 또는 不明한 것도 많은 것이다. 이와같이 研究할 수 없는 것이라든지 經驗의 不足에 依하여 慢性의 毒性이나 急性의 毒性 같은 危害의 공포가 있기 때문에 食品衛生法에 있어서는 化學合成品을 一應全面的으로 그 使用을 禁止하고 있으며 다만 保健社會部令에서 安全하다고 指定하고 있는 것에 限하여 그 使用을 許容하고 있는 制度를 採択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現在 法上 그 使用을 許用하고 있는 化學的 合成品은 約 250余種으로서 今後 이의 許容의 範圍는 漸漸增加하고 있는 傾向이 있는 것이다.

끝으로 “食品衛生法 第2條”에서 “化學的 合成品이라 함은 化學的手段에 依하여 元素 또는 化合物에 分解反應以外的 近學反應을 일으켜 얻은 物質을 말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다음항로 계속)